



제1725호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924 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1925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4
○ 조	례 제 1926 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6
○ 조	례 제 1927 호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9
○ 조	례 제 1928 호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12
○ 조	례 제 1929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33
○ 조	례 제 1930 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38
○ 조	례 제 1931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 육 진 흥 과	40
○ 조	례 제 1932 호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44
○ 조	례 제 1933 호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48
○ 조	례 제 1934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 시 경 관 과	51
○ 조	례 제 1935 호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건 축 과	56
○ 조	례 제 1936 호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공 동 주 택 과	60

규 칙

○ 규	칙 제 1108 호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총 무 과	64
-----	------------	--------------------------	-------	----

훈 령

○ 훈	령 제 400 호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민 원 봉 사 과	69
-----	-----------	-----------------	-----------	----

공 고

○ 공	고 제 2079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77
○ 보	건 소 공 고 제 2078 호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88

고 시

○ 고	시 제 12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90
-----	-----------	-----------------	-----------	----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4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홍보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을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2022.11.01.)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 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
 - 명칭변경 : 행정국, 홍보실, 미래전략과, 정보통신과, 세무1과, 세무2과
 - 폐 지 : 소통협력담당관
- 사회도시위원회
 - 명칭변경 : 복지국, 도시국,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 위원회변경(사도→총무) : 미래전략과 (구) 공영개발과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5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의장은 다음”으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를 “자문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 신설(안 제35조)
-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4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6호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대하여”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에게”로 한다.

제4조 중 “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별표 5”를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으로 한다.

제9조 중 “남동구”를 “남동구의회”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연도	지 급 액(1인 기준)
2023년	월 2,354,71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6조)
- 2023년 ~ 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안 제3조제2항, 별표2)
 - ▷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연 28,256,520원)
 - ▷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7호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원수		
	대상자 구 분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65세이상 단독세대 ☐ 18세이하 청소년세대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소화기(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개) * 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장치)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	--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화재 재난에 취약한 대상 범위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화재 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화재 재난에 취약한 대상 범위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포함하여 신설함(안 제2조)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 및 노인과 저시력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8호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명칭은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단원: 별지 제2-1호서식 작성

2. 단체단원: 별지 제2-2호서식 작성 및 붙임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 ①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수 있다.

제9조(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후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검토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4.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증폭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출입증)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단장 :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재난 관련 전문교육

2. 단원 :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

②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제11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해당 단원과 그 유족 등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남동구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
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별지 제2-1호 서식〕

가입 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자 격 증 또는 기능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 신청서 <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여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불임〕

가입 희망 회원 명부

[단체명]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학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장(○○○동장)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별지 제5호 서식〕

활동 계획서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반명함 사진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5.5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혈액형 :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동구청장

7.7cm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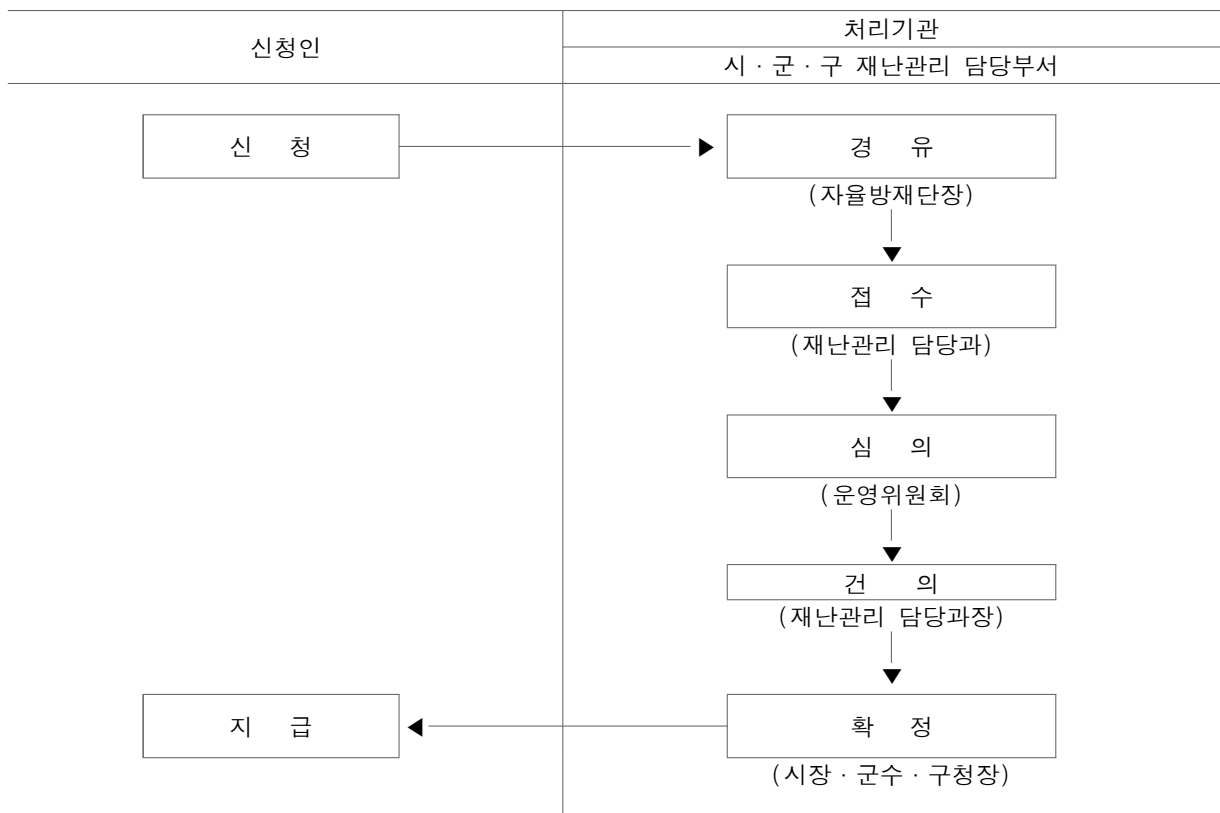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방재단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환수에 관한 규정 세분화(안 제17조 ~ 제1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29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를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만 18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개모집”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학교·기관·단체·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다만, 선정된 위원 수가 전체위원의 4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정원 범위 내 충원이 가능하다.

제8조제3항 중 “10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과 같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를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음년도”를 “제14조에 따른 다음년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제1항 중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세”를 “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가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을 “제7조제1항 각 호의”로, “않는”을 “않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를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의 분과위원회 및 제23조의 주민자치협의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동장”을 “동장 또는 자치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을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예산”을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로 한다.

제3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남동구 주민자치 정책 추진 과정 중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 기준일 등 명확화 및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 확대 : 안 제7조
- 위원의 선정 비율 보완책 마련 등 : 안 제8조
- 감사 결과 보고 대상 추가 : 안 제11조
- 제13조 및 제14조의 중복 규정 삭제 및 명확화 : 안 제13조
- 자치계획의 유효기간 신설 : 안 제14조
-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연임 횟수 축소 등 : 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규정 추가 및 절차 명확화 : 안 제20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 안 제20조의2
-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확대 및 실비 재원 확대 등 : 안 제30조
- 강사 수당 재원 확대 : 안 제31조
-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 신설 : 안 제36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0호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4호 후단”으로 한다.

4.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통장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통한 통장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통반장의 위·해촉
 - 연령조건 수정 (25세 이상 → 18세 이상)
 - 2회 연임 통장의 제한적 재위촉 사유(근거) 마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1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체육회 설립비용 및”을 “다음 각 호의”로, “등을”을 “등 보조금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2조,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08.11.시행)에 따라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관리 투명성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문화

□ 주요내용

- 자구수정(안 제10조)
-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통제장치 마련(안 제11조)
- 각종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
(안 제12조~안 제13조)
-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2조)
- 지방보조금 관리 및 행정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명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준용 규정 마련(안 제2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2호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남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3호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법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
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범죄예방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 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안심귀갓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 방범 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구민이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4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개당 14만원	개당 18만원	개당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개당 49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개당 80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 한 금액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 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장당 14만원	장당 18만원	장당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장당 80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5천원
라) 30장 초과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0장 초과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 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 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 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 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남 동 구 청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전단’의 신고 표시 방법 개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2021.12.14.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의 전단 신고 수리 후 민원인이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서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 개선(조례 제3조제2항 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 조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10] 변경

조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5호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에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 가. 대지위치
 - 나. 용도 및 구조
 -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라. 건폐율, 용적률
 -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정의 (안 제2조)
-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3조)
- 사전고지의 내용 (안 제4조)
- 사전고지의 방법 (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조례 제1936호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책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입주자등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안 제9조)
- 홍보 및 포상(안 제10조 ~ 제11조)

규 칙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규칙 제1108호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00 동 00 통장 지원서

1. 일반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주택)		핸드폰)		
직업			학력		
현주소지 거주기간	년 월 (. . ~ . .)				

2. 주요경력 활동(수상)경력

근무(활동)기관	직위(직책)	근무(활동)기간	근무(활동)내용

※ 단체활동 경력등을 포함 기재하되 허위 기재시 통장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증빙서류 첨부)

3. 지원동기

4. 통장 지원에 따른 숙지 사항

☞ 통장 해촉 기준

1. 해당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에 대한 진정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2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6.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9.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0.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장의 역할 및 임무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상회 운영 활성화
4. 사건·사고 우려지역 통보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위의 통장 해촉 기준 및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숙지하고 통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서명)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동 00통장 선발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주요활동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며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00 동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통장 선발 심사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통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 불가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지원자

(서명)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통장의 연임 및 공개모집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통한 통장 조직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공개모집
 - 2회 연임 임기만료 통장의 공개모집 지원 조건 삭제

훈 령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1월 17일

남동구 훈령 제400호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민원봉사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구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부구청장, 주관부서의 국장,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남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전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0000부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20년 12월 22일 「청원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구 자체 청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청원심의회 심의 원칙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안 제9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2079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정책 추진 과정 중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에 대한 각급 학교 등의 범위 명확화 : 안 제7조
- 주민자치회 회장 임기에 관한 특례 : 안 부칙 제2조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정비 : 안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0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붙임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에 대한 각급 학교 등의 범위 명확화 : 안 제7조
- 주민자치회 회장 임기에 관한 특례 : 안 부칙 제2조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정비 : 안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설립등기”를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를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구월4동, 간석2동)을 제외한 18개동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종료일을 2024.12.31.로 일괄 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동(구월4동, 간석2동)의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2022.12.31.로 종료시키고, 2023.1.1.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되 기존 회장이 선출될 경우 연임에 의한 임기 시작일을 2023.1.1.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관: <u>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u> 3. 단체: <u>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및 정관, 회원명부,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직능단체</u> <신설>	제2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 제7조제1항제4호----- ----- ---. 1. (현행과 같음) 2. --- <u>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u> ----- 3. 직능단체: <u>직업이나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를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u> 4. 공공단체: <u>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u>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제3조제1호 관련)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모집인원 : 00명 (개인 00명, 추천 00명)
※ 개인 00명(남 00명, 여 00명), 추천 00명(남 00명, 여 00명)
3.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4. 자격요건 :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5. 구비서류 : 위원신청서(또는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6시간) 사전 이수자 중 공개추첨
8. 참고사항
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
나.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9.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년 월 일
남동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제3조제2호 관련)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위원 활동경험	유 ☐ 무 ☐
E-mail		직업 (직위)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와 같이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00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장·사업장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접수자	(인)

(뒷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심사, 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email, 주요활동 경력	주민자치회 위원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일반주민	위원 위촉 공고	성명, 성별	공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동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제3조제3호 관련)

피 추 천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직 위)	
	E-mail			
추 천 인	기관(단체)명		대표 성명	(남 / 여)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자생단체 또는 마을활동 위주)				
추천 사유				

년 월 일

위 사람을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또는 단체) : (인)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추천에
동의합니다.

피추천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 00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접 수 자	(인)

(뒷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동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심사, 위원 선정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email, 주요활동 경력	주민자치회 위원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주민자치 위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통계수집, 사업정보제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 최초 위촉 후 연임 시 최대 6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일반주민	위원 위촉 공고	성명, 성별	공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위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동장 귀중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2078호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의거 청문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11. 16.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2. 11. 16. ~ 2022. 11. 30.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유흥주점	2000-0199707	나이스	정**	간석동 122-19	-
유흥주점	2007-0199743	궁	안**	간석동 315-5, 나동 1층일부	-
유흥주점	2007-0199744	별궁	안**	간석동 315-5, 나동 1층일부	-
유흥주점	2007-0199745	걸스	심**	남동대로915번길 22, 나동 1층(간석동)	-

4.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5. 사 유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1)
- 청문일시 : 2022. 12. 12.(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214 (장수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6 (구월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2-1, 3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214 (장수동)	2009.11.16.	만의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2.11.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 21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6 (구월동)	2022.11.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8 (구월동)	2022.11.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16 (간석동)	2022.11.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58 (간석동)	2022.11.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